

한 의 과 대 학 한 의 예 · 학 과 운 영 위 원 회 지 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, 한의학과 운영을 위한 한의예과, 한의학과 운영위원회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한의예과, 한의학과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학장, 부학장, 한의예과장, 한의학과장, 한의과대학 학생회장,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회장으로 하고, 학장이 위원장이 되며, 임명직 위원은 한의예과, 한의학과 교과목 담당 참여교수를 일부 포함하여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,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한의예과, 한의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2. 한의예과, 한의학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3. 한의예과, 한의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예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당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,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수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,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)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